



제429회국회(임시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취약지 우선 지원 등 〉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15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취약지 우선 지원 등	2

I. 개요

1. 임종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31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종특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26.

(3) 회 부 일 : 2025. 9.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나 혈액보유량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신속히 찾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의료기관을 찾았더라도 의료기관 내 보유 혈액이 부족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의2제5항 신설).

② (생략)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④ (생략) <u><신설></u>	<u>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하여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나. 검토의견

- 우선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을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5년 10월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시·군·구)이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총 98개(시·군·구)이며, 인구감소지역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간에는 총 79개(시·군·구)가 중복되어, 지역의 인구감소와 응급의료 취약성 사이에 연관성 또는 상호 영향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선적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지역 특성, 재정자립도 및 응급의료기관·시설 등의 인프라와 같은 사항과 함께 이러한 지역 간 중복 지정 현황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현황

시·도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중복 지역(총 79개)	기타 인구감소지역(10개) 및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19개)
부산		(인구감소)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군위군	(인구감소) 남구 서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응급의료취약)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응급의료취약)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인구감소) 제천시 (응급의료취약)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인구감소) 논산시 (응급의료취약)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
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인구감소) 김제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인구감소) 화순군 (응급의료취약) 나주시 무안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인구감소) 안동시 (응급의료취약) 예천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응급의료취약)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		(응급의료취약) 서귀포시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및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보건복지부고시)를 바탕으로 작성

□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하여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재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혈액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제3항4)에 따라 혈액제제의 공급량·폐기량·재고량 등 혈액 수급정보를 매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사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는 등,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및 응급영상 판독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 중임.

4) 「혈액관리법」 제13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② 혈액원(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매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정오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날의 혈액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정보는 월별로 일괄하여 그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혈액을 공급받은 일시
 2. 혈액제제의 명칭, 혈액번호 및 혈액형
 3. 혈액제제의 사용량, 사용일시, 폐기량, 폐기일시 및 재고량
 4. 수혈자의 성별, 연령, 혈액형 및 진료과목
 5. 그 밖에 혈액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부족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당일의 혈액 사용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 확보·관리 노력 필요성에도 동의함.

□ (대한응급의학회) 의료기관에서의 혈액관리는 「혈액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혈액관리를 위한 노력’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실현가능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인구감소지역 등 주민들이 응급상황 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 혈액 공급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09